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1 선고 2022나426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1 선고 2022나42662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10120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2. 10. 19.

판결선고 2023. 1. 11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. 11. 선고 2021가단10120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9지분에 관하여 2017. 7. 1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,546,4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2,546,432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하4행 “추정된다.” 다음에 “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”를 추가하고, 7면 하4행 “130,852,857원”을 “130,852,862원”으로, 8면 4~5행 수식을 “54,101,083원{=243,454,877원(=130,852,862원+40,250,000원+31,000,000원+41,352,015원)×2/9}”으로, 8면 하8~7행 수식을 “187,606,964원{=106,906,964원(=2,500,000원×151.8㎡×27,100/96,200)+57,400,000원+23,300,000원}”으로, 8면 하5행 “74,755,968원”을 “74,755,977원”으로, 8면 하2~1행 수식을 “28,167,994원{=126,755,977원(=74,755,977원+28,700,000원+23,300,000원)×2/9}”로, 9면 2~3행 수식을 “6,005,745원(=40,000,000원×28,167,994원/187,606,964원)”으로, 9면 6행 수식을 “48,095,338원(=54,101,083원-6,005,745원)”으로, 9면 10~11행 수식을 “41,095,338원(=48,095,338원-7,000,000원)”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우종, 판사 강태규, 판사 주문식

별지